

보험금 환수 규정·금융당국 수사권 부여 시급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하> 대책마련

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에 개정 조사권한 강화·처벌 규정 변화도 가중처벌 불구 범죄 건수 증가 “꾸준한 법 개정으로 사기 근절”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지난해 1조1000억원을 돌파하며 매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에 이미 지급된 보험금 환수 규정이 없고 경찰의 특별단속에도 보험사기가 횡행해 근본적인 사각지대는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이 보험사기에 대한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 조사 강도를

한층 강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보험업계가 요구해온 가중처벌 조항과 환수 규정 등 법 개정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등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월 시행됐다. 8년 만에 개정된 보험사기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만 해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에는 금융당국의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 요청권과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공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도 명시됐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보험사기 행위가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만 명시돼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에 금융당국이 대처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알선·유인 단계에서도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고 보험사기 관련 심의·시정요구 요청권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도 강화됐다.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보험사, 통신사 등에 보험사기 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 상당수가 보험 종사자에 의해 발생하는데, 개정안에 제외됐던 보험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를 보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33차 전체회의를 통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 조직적 사기의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 11년 이상이었다던 가중처벌을 무기징역으로 확대하고 보험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 ‘가중인자’로 삼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 당국은 지난 7월부터 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전년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며 이는 매년 새로 갱신된다.

다만 보험사기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이미 지급된 보험금 환수 규정이 없고 금융당국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보험사기특별법에는 보험사기 유죄 판결 이후 보험금 환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민사 소송을 거쳐서 승소를 해야만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년에 걸쳐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동안 보험금을 탕진하거나 은닉하게 될 경우 사실상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이 진행한 보험금 반환 민사 소송의 전부승소율은 80~90%를 밀도는 것으로 집계돼 유죄 판결이 나도 전액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보험공단에도 없고 민간에 대한 침투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꾸준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며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환수 규정을 명문화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원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서 60억대 전세사기 50대 징역 10년

공범 8명, 징역 6개월·벌금형 보증금으로 매입 등 돌려막기

광주에서 자본금 없이 임대차 계약 보증금으로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일삼다 보증금 6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신용불량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게 징역 6개월이나 300만~9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광주에서 64명의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총 68억3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기존 채무가 30억원에 달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하는 신용불량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에게 “전세 계약이 완료되면 보증금을 다 반환할 수 있고, 여러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안심시켰다.

그렇게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은 A씨는 또 다른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쓰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을 돕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아파트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를 낼 능력이 없어 전세보증금으로 이자를 감당하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타인의 금융계좌를 양도받아 쓰기도 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을 안일하고 무리하게 부동산을 취득, 임대 사업을 확장하다 결국 다수 세입자들에게 거래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양산동 기부천사들 광주 북구 공공형어린이집 아이들과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이 17일 북구 양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따순마을! 희망을 이야기하다! 공공어린이집 후원물품 기탁식에서 기부한 라면으로 사랑의 라면트리를 만든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라면은 북구 관내 취약계층 세대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계획이다. **나건호 기자**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생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민원기자**

고령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스마트 돌봄 솔루션 AI IoT 음성인식 SOS 돌봄 서비스

2024년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지원 지원 과제 - AI IoT 음성인식 SOS 돌봄 서비스

- ☑ **긴급 상황, 신속 대처** AI 음성인식 디바이스가 위급상황을 감지하여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알림 전송, 빠른 대응 지원
- ☑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스마트플러그를 통해 가전제품의 사용 패턴을 실시간으로 확인, 고독사 위험 알림
- ☑ **경제적 효율성** 필수 기능만 포함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 가능한 스마트 복지 서비스



응급 상황에 대한 빠른 조치 및 고독사 방지

DAWONDNS DAWON DEVICE NETWORK SYSTEM

2025년 광주광역시 고향사랑 기부제 2,000세대 공급 예정

고향과 함께, 사랑을 같이, 기부로 나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구성 요소



AI 음성인식 디바이스 및 스마트플러그

통합관리 시스템